

##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49호, 2018, 8, 14.,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02-397-730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 **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 **47** ( )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1.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 2. 제4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 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5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핵원료물질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⑤ 핵원료물질사용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2조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2조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신설 2014, 5, 21,〉
  - ⑥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법제처 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 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 ·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5.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 ⑦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1. 〉
- ⑧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신설 2014. 5. 21. >

<제15749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